

##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

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(이하 '보증기관'이라 한다), IBK기업은행 및 (주)신한은행(이하 '협약은행'이라 한다)은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'문화체육관광부', '한국콘텐츠진흥원', '보증기관'과 '협약은행'(이하 '협약당사자'라 한다)간 상호 보유한 자원과 정보를 활용하여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'콘텐츠기업 이차보전대출'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콘텐츠분야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.
- ② '협약보증서'란 보증기관과 협약은행이 콘텐츠기업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별도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보증서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 원칙)** 협약 당사자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협력사항)** 각 협약 당사자는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력한다.

-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 예산 지원 및 협약 당사자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지원
- ② 보증기관은 콘텐츠기업을 위한 협약보증서 발급
- ③ 협약은행은 협약보증서가 발급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대출 지원 및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서비스 제공
- ④ 그 외 협약 당사자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 콘텐츠기업 발굴 등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안

**제5조(지원대상)** ① 본 협약의 지원대상은 문화콘텐츠분야 중소기업 중 보증 기관의 협약보증서가 발급된 기업으로 한다.

② 협약보증의 대상 자금은 지원대상 기업의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하는 자금으로 한다.

**제6조(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)**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019년 신규 대출기업의 이차보전 종료시까지 한다.

②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다.

③ 본 협약은 유효기간 전이라도 당사자와 서면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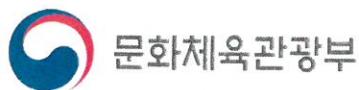
**제7조(비밀유지)** 협약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본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8조(추가 협약 및 기타사항)**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또한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**제9조(합의관할)**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되, 상호 합의에 의해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고,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**제10조(협약의 증명)**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6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상호 직인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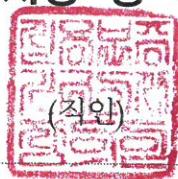
2018년 4월 23일



장관도종환



이사장 황록



이사장 직무대행  
전무이사 강남규



원장 김영준



은행장 김도진



은행장 위성호

